

『 구미시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한정우 의원 외 5인

2. 제안이유

「도시공원법」을 토대로 「구미시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조례」가 제정되었으나 「도시공원법」이 폐지되고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보완·정비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「도시공원법」을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 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)
- 「도시계획법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 (안 제3조,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수년전에 폐지된 「도시공원법」과 「도시계획법」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법 적용 및 해석시 혼선과 착오가 있을 우려가 있어 개정된 법에 따라, 법률 명칭과 법조문을 수정 적용하고자 하는 안으로서
- 주요 내용은 「도시공원법」이 「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로 2005년 3월 3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법명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.
- 또한 조례에 인용된 「도시계획법」이 2002년 2월 4일 폐지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적용됨에 따라, 현행법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-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주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됨